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장애인이 단순한 이해의 대상을 넘어 존중받는 동료이자 조직의 일원으로 수용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에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을 추가하고,
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국가기관의 장)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상황 기록’ 제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연도 고용(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삭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에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을 추가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1호 개정)
나. 국가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 삭제 (시행령 제23조 제2항 일부삭제)
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 삭제 (시행령 제27조 일부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하며,
제23조제2항 중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
상황을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각각”을 “1월 31일까지”로 하며,
제27조 중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 31일까지 각각”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 4. (생략) ③ ~ ⑦ (생략)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① 법 제2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이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의 장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① 법 제2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이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의 장

②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 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매년 <u>1월 31일까지</u> , 해당 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 상황을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 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매년 <u>1월 31일까지</u>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은 <u>1월 31일까지</u> ,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u>7월 31일까지</u>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은 <u>1월 31일까지</u>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연 락 처	(044) 202 - 7489